

2021년 노인복지관 평가지표 FAQ

A. 시설 및 환경

A1-①. 편의시설이 법적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된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에 맞게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법 시행 전과 후 설치시설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또는 가산점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칙(법률 제5332호, 1997.4.10.) 제2조 제①항에 따라 법률 시행 전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7년 이내 법에 명시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적 조건에 의해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동법 제15조(적용의 완화)제①항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에, 시설평가에서는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지자체 승인된 근거서류를 제시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설 공사 및 신축 등으로 민간건물을 임차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답변) 사회복지시설은 직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관의 공사 또는 신축으로 별도건물 임차 운영 중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평가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A1-②.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한 실적이 있다.

(질문) 지자체에서 기능보강(단순 유지보수 포함)을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있어 시설에서 근거서류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본 지표는 시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자체에서 기능보강 또는 유지보수를 진행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받아 증빙하여도 되고 실적이 없더라도 쾌적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으면 해당지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A2-③. 월1회 이상 안전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설명회 자료에 제시된 점검표 이외에 시설 자체점검표도 인정되나요?

(답변) 안전관련 자체점검표는 내용 구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점검표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A2-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가산점)

(질문) 본 시설은 LH 임대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에 준공 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지자체와 LH에 모두 문의하였지만 내진설계를 했지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다는 답변을 들어 건축물대장으로 증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건축물대장과 구조안전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해당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최초 건물을 설계한 회사로 문의하거나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3-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질문) **응급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예시)이 궁금합니다.**

(답변) 각 시설마다 시설의 구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응급상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를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3-⑦.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질문) **92년 LH에서 건축 당시 스프링클러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어 설치되지 않았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 당시 법적조항이 없었어도 시설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른 적용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지표 A3(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구축) 참고란의 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사업비 비율

(질문) **경상보조금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지원받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말하며, 재무회계규칙 중 '관03 보조금수입-항31 보조금수입-목311 국고보조금, 목312 시·도보조금, 목313 시·군·구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단, 자본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 기타보조금, 세입결산금액 중 반환금은 제외)

(질문) **노인장애인복합복지관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만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주시고 지출증빙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B3-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질문)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단운영시설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지자체직영, 공단운영시설, 지자체출자출연법인 산하시설은 해당항목을 인정합니다.

B3-②.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질문)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 증빙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였을 경우는 평가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추가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한 화면을 캡처,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자료를 증빙자료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B3-③.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질문) 재정보증은 담당자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급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B6. 직원 근속률

(질문) 법인 내 인사이동의 경우, 유사시설에 대한 인정도 필요합니다.

(답변) 본 지표를 통해 평가대상 시설에서의 근속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 인사이동의 경우, A시설에서 퇴사처리 후 B시설에 입사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의 연속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법인 내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동종시설(노인복지관→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기준을 완화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확인바랍니다.

(질문)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발령 등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낮기 때문에 별도의 근속기간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답변) 본 지표는 직원의 근속을 통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예외사항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문) 2017년 12월에 설치된 시설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30개월 근속자가 발생하는 2020년 12월 근속자 수로만 산정합니다.

B7.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교육 참여시간

(질문) 육아휴직 대체자의 교육활동비 및 교육시간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근무월 기준으로 산출하며 육아휴직자와 대체자의 교육활동비 및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 평가대상기간 중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한 직원의 교육활동비와 활동시간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근무월 기준으로 산출하며 퇴사한 직원의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교육비와 시간은 포함됩니다.

(질문) 아르바이트를 주40시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주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인건비 중 일용잡급(목113)으로 지급되는 인력(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은 직원에서 제외합니다.

B7-①. 시설의 직원 1인당 3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을 산정한다.

(질문)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만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설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 업무가 예상됩니다.

(답변) 우리원에서는 향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관리를 진행하여, 별도 평가 자료 준비가 필요없는 평가준비의 시스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지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도입시점인 현재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법인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하였을 시 법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본 지표는 시설차원에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B7-②. 시설의 직원 1인당 내·외부교육에 참여한 평균시간을 산정한다.

(질문) 시설 내 워크숍 운영 시 타시설방문을 할 경우에 교육비와 교육시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타시설 방문에 소요된 경비, 시간 모두 인정됩니다.

(질문) 총회, 공청회, 설명회 참석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만 인정하므로 미인정합니다.

(질문) 교육시간이 분단위로 산정될 때 입력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체직원의 교육시간을 합산한 후 분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합니다.

(질문)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 시간 산정 시 이동시간이나 식사시간도 포함하나요?

(답변) 모든 교육활동시간은 공식적인 증빙자료(공문, 수료증 등)에 명시된 교육시간만 인정하며 이동시간, 식사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8-③.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질문) 시설 내 승진으로 부장이 시설장으로 임명될 경우는 공개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본 지표에서 예외대상은 없습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승진으로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해당 부장을 최초 채용 시 공개채용 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질문) 시설 내 승진으로 임명된 시설장을 신입직원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내부승진에 의한 시설장은 신입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B8-③.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질문)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어떻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공개채용에 대한 내용이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설장이 법인으로부터 임명받은 성직자로, 법인에 공개채용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예, 순환직 직원 등)하는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 공개모집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9.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부장)의 전문성

(질문)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지만, 관련 과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B9-①.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질문)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장 기준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본 지표에서는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B9-②.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다.

B9-⑤. 최고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질문)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근무경력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지표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참고로 산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사 만 3년 이상, 선임사회복지사 만 5년 이상, 과장 만 7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련한 기준으로 최고중간관리자 10년, 시설장 15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B9-③. 시설장은 노인복지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B9-⑥. 최고중간관리자는 노인복지관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질문) 타 유형 경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종시설의 경력만 인정이 되며, 타 유형 경력은 미인정됩니다.

B10-④. 신입직원 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며 1인당 2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법인 내 인사이동자도 신입직원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법인 내 시설의 경우에도, 소재지·지역특색·운영시스템·사업특성 등이 상이하므로 신입직원으로 구분하여 시설 및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B11-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질문)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 시간외근무는 1.5배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1.5배를 대체휴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B11-③. 정기적인 내부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질문) 포상제도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포상제도나 지자체의 포상제도로 운영할 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적으로 직원 포상을 위한 제도가 시설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경우 인정됩니다. 시설의 운영규정에 자체적이고 정기적인 포상제도 없이 지자체 혹은 법인의 포상제도를 명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11-⑤.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질문) 법인차원에서 노사협의회가 있고 산하시설 직원의 일부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시설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를 하고 그 내용이 법인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경우는 인정됩니다. 직원의 고충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연2회 이상 직원 고충관련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B12-②. 직원 고용계약 시(또는 연장 시) 합당한 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초의 근로계약을 성립한 후 변경사항이 없어도 매년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종료일이 없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같음합니다.

D. 이용자의 권리

D1-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질문) 시설에서 자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자물쇠로 표시되며 외부반출 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체 보안프로그램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시설 내 직원이 별도의 승인과정(파일별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D1-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D2-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내부직원이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내부직원도 해당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을 진행하는 직원은 별도로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D2-③.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인권교육을 1회, 4시간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0년도 부터는 연도 내 4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한번에 4시간 또는 4회에 나누어 4시간 운영 등 운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 변호사도 외부강사 교육기준에 인정되나요?

(답변) 지표에 명시되어 있는 외부강사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변호사일지라도 외부강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D2-④.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2020년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이 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수료증을 필수 지참해야 인정됩니다.

(질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해도 인권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의 내용과 강사기준이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인정됩니다.

D4-③.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의 표기방법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

(질문) 웹접근성 향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홈페이지 그림에 마우스를 대면 음성으로 안내되거나, 웹접근성 확인 인증마크 획득, 게시글 작성 시 그림파일로 올리는 경우 그림파일에 담겨진 정보를 별도로 타이핑하여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E. 외부자원개발

E1. 외부자원개발

(질문) 2020년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으나 2021년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원서는 선정일 기준, 지원금은 입금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프로포절 체결건수만 인정되며, 외부지원금은 2021년이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평가 시 적용됩니다.

E1. 외부자원개발

(질문) 외부자원금으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복지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원시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부자원금은 시설 통장 혹은 대상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인정되며 차량지원, 놀이터 조성 등은 현물후원금으로 프로포절 체결건수로만 인정됩니다.

E1-① 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질문) 유가증권(상품권, 주유비 등)은 금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가증권은 ①시설의 외부자원금 비율항목에서는 미인정되고, ②시설의 외부자원개발을 위한 프로포절 체결건수 항목에서는 인정됩니다.

E3-④ 후원자(금/품) 후원내역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대상기간은 후원기간이 기준인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시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상기간인 2020년의 후원내역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로 판단합니다.

○ 기타

운영규정 관련

(질문) 법인 운영규정에 시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의 운영규정 및 지침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법인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규정 및 지침은 그 시설의 인력, 조직,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인운영시설은 법인 이사회, 개인운영시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질문)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규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의 운영규정 분리를 진행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시점에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운영규정 및 지침의 내용이 현행법,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의한 내용이 2020.12.31.기준으로 현행화 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분관설치 관련

(질문) 평가대상기간 중에 분관이 개관했습니다. 평가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관의 평가는 개관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분관을 설치하면서 시설의 규모(유형)가 변경되었을 경우,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도 규모가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규모를 적용하여 평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